

한여울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여울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하 학생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을 지닌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의 학교생활인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제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1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16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25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 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 을 지원한다.

제1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1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2	도박을 한 학생	○	○	○	
1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5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6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제1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의 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21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

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 ·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 · 응답
 4. 담임 ·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 · 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 · 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 의결
-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23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권리와 책임>

제26조(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 ①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②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 ③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 ④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⑥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상, 징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⑦ 자기정보를 결정하고 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할 권리

제27조(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① 상호 존중하며 폭력과 체벌을 행하지 않을 책임
- ②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 ③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④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킬 책임
- ⑤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 ⑥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영위할 책임

<제2절 학생 생활>

제28조(기본품행)

- ① 기본예절과 질서: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실내생활: 실내생활 시 우측통행을 하고, 소란스럽게 뛰지 않아야 하며, 고성이나 고성으로 타인의 학습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학습: 학생은 교육활동 시간에 성실히 학습에 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제2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1조(교우관계)

- ①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
- ② 교우 사이에 욕설, 비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도록 한다.

제32조(양성평등)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② 성(性)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동성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33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체육활동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한다.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34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안정된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3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단체모임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기타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에 유의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 ⑧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흥기, 화기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3절 정보통신 >

제3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학생은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제3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소지 할 수 있으나 학교 일과 중 교육목적상 규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단, 학부모와 긴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

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는 교사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④ 교실 내 전화기는 교사의 허가 하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⑤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혐의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학생 자치회>

제39조(회원) 학생자치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40조(학생자치회의 운영)

- ①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와 전교자치회로 운영하며 전교자치회는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능을 갖는다.
- ②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③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④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학생자치회의 구성)

- ① 학급자치회
 - 1. 학급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한다.
 - 2.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 4. 학급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전교자치회
 - 1. 전교자치회는 회장(6학년) 1인, 부회장(5,6학년) 2인, 학급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전교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2조(권리 및 의무) 학생 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및 전교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전교자치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급 및 전교자치회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및 청취할 권리를 가진다.
(학기당 1회 이상)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3조(학생자치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지도교사는 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4조(협의, 지원 사항)

①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요 정책 결정 사항
5.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의

1. 전교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급자치회는 학급별 교육과정 내에서 월 1회 이상 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한다.

<제5절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보장>

제4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 물품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물품을 열람할 시 개별적으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③ 소지품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제36조 ⑥, ⑦ 해당](#))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일괄적 소지품검사는 금지한다.)

④ 소지품검사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소지품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소지품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 생활안전부장교사 등이 진행하고,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양심, 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6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49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 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제,개정

제51조(제,개정 원칙)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5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

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3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5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6조(공포 및 정보 공시)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 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교육청에 보고한 후 제, 개정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제57조(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59조(개정절차)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